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나662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나662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078133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8. 5. 9.

판결 선고 2018. 6. 27.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078133 판결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과 나.항의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4,522,997원"으로 각 경정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①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B과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③ 피고 C은 원고에게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A와 피고 B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 2) 피고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14. 2. 28. 채권자 주식회사 에프에스네트웍스, 청구금액 68,14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23. 해제되었고, 2014. 5. 13. 대한민국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14. 5. 28. 해제되었으며, 2014. 9. 17.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다가 2015. 1.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는 2014. 6. 13.경 대출기한이 2015. 6. 12.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15. 1. 15.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출기관인 우리은행은 2015. 3. 1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0.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다.
- 4) 피고 B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5)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4. 7. 3.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내역 갑 제10, 11,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적극재산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 424,664,820원 (시가 715,664,820원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91,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 ②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대지 및 건물: 170,964,500원 (시가 620,964,500원에서 전북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5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 ③ 특허권 : 5,000,000원
- ④ 하나은행 예금채권 : 67,746,890원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 나) 소극재산

-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 188,124,990원
- ② J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20,000,000원
- ③ 우리은행 보증채무
- ㉠ 20,000,000원 (계좌번호 K의 대출원금임,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한도가 24,000,000원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채무액이 위 원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주채무를 2015. 12.경 대손상각으로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위 보증채무를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2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위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다음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2015. 12. 22. '예외상환'을 이유로 대손상각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피고 B의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대출채권자가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채권 추심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㉞ 100,000,000원 (계좌번호 L의 대출원금임,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한도가 120,000,000원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채무액이 위 원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의 주채무는 피고 A의 매출규모, 경영상태를 근거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종의 담보대출과 같은 것이고, 원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도 신용보증약정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은행에서도 2015. 12.경 위 주채무 전부를 대손상각으로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의 신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대출금채무를 부동산 담보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위 주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제2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은행이 원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5. 12. 22. '예외상환'을 이유로 대손상각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피고 B의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대출채권자가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채권 추심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㉟ 원고는 이외에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91,543,814원의 보증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4대의 차량에 관하여 피고 A 등이 체결한 렌탈계약 및 리스계약의 렌탈료, 리스료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액이 원고의 주장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채무의

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잔존 채무에 관하여 일종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액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재산변동

을 제5 내지 8, 10 내지 13, 16,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95,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4. 5. 27., 잔금 345,000,000원을 2014. 7. 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4. 5. 23.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8.부터 2014. 6. 10.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A는 2014. 5. 28. 국세 및 지방세 137,191,14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 C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4. 7. 3. 피고 B에게 17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4. 7. 3. 위 금원 중 125,758,903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위 피담보채무 변제 후 피고 B의 하나은행 예금 잔액은 67,055,18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책임재산의 가액이 424,664,82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의 가액{328,124,990원(=188,124,990+20,000,000+20,000,000+100,000,000)}이 적극재산의 가액{243,019,685원(=170,964,500+5,000,000+67,055,185)}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B의 예금채권액을 2014. 5. 27. 기준 232,783,566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예금채권이 소극재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52,160,490원{=328,124,990-(170,964,500+5,000,000)} 이상의 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예금 잔액은 중도금 지급 다음날인 2014. 5. 28. 82,783,566원으로 된 후 대체로 감소하여 잔금 지급일인 2014. 7. 3.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7,055,185원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주된 적극재산의 처분 결과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137,191,140원의 국세 및 지방세 채무 외에 피고 B 또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할 만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7, 8, 2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95,000,000원은 시가감정결과인 715,664,82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 금액이 부당한 염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428,000,000원(=50,000,000+200,000,000+178,000,000)을 지급한 것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나아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후인 2014. 5. 23.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지급 후인 2014. 5. 28.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B의 변제자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4)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8, 10 내지 13, 16, 23, 2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변제자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책임재산 가액인 424,664,82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254,522,997원[=188,124,990+{182,769,780×(3+10/365)×0.12}, 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구상금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54,522,9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54,522,9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과 나.항의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9.을 기준으로 "254,522,99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정지선**

**판사한재상**

**별지**